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⁶
C09B 67/22

(11) 공개번호 특1993-0008076
(43) 공개일자 1993년05월21일

(21) 출원번호	10-1992-0019476
(22) 출원일자	1992년 10월 22일
(30) 우선권주장	P4134933.4 1991년 10월 23일 독일(DE)
(71) 출원인	헥스트 아크티엔게젤샤프트 마이어 독일연방공화국 데-6230 프랑크루프트 암 마인 80 브뤼닝스트라세 50 헥스트 아크티엔게젤샤프트 라피체
(72) 발명자	독일연방공화국 데-6230 프랑크루프트 암 마인 80 브뤼닝스트라세 50 에르빈 디이츠 독일연방공화국 데-6233 켈크하임 (타우누스) 장크트 마테우스스트라세 7 만프레트 우르반 독일연방공화국 데-6200 비스바덴 스타이거발드스트라세 20아 김창세, 김영, 장성구
(74) 대리인	김창세, 김영, 장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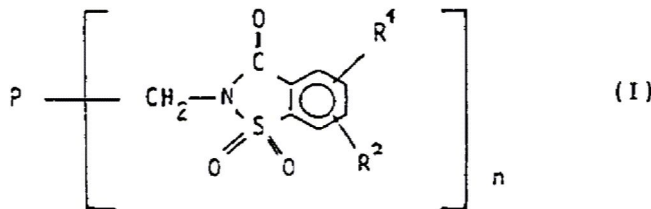
심사청구 : 없음

(54) 안료 제제

요약

하기 (a) 및 (b)를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안료 제제 및 플라스틱 조성물, 용융물, 방사액, 와니스, 특히 폴리우레탄 기재 수성 와니스 또는 저용매 높은 고형물 아크릴 와니스, 코팅 조성물 및 인쇄 잉크, 특히 니트로셀룰로즈 기재 인쇄 잉크 형태의 고분자량 물질을 착색시키기 위한, 이들의 용도.

(a) 아조, 안트라피리미딘, 안탄트론, 퀴나크리돈, 페리논, 디케토피롤로피를, 디옥사진, 플라반트론, 인단트론, 이소인돌리논, 이소비올란트론, 페릴렌, 프탈로시아닌, 피란트론 또는 티오인디고 안료군 또는 상기 언급한 군중 여러 군에 속하는 안료의 혼합물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안료, (b) 하기 일반식(I)의 적어도 하나의 분산제



상기 식에서, P는 (a)에서 언급한 안료와 독립적으로, 아조, 안탄트론, 퀴나크리돈, 페리논, 디케토피롤로피를, 디옥사진, 인단트론, 페릴렌, 프탈로시아닌 또는 티오인디고 안료의 라디칼이고, R¹ 및 R²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할로겐, C₁-C₄-알킬, C₁-C₄-알콕시 또는 니트로이고, n은 1 내지 4이고, 사카린 라디칼의 CH₂그룹은 P의 방향족 탄소원자에 결합되어 있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안료 제제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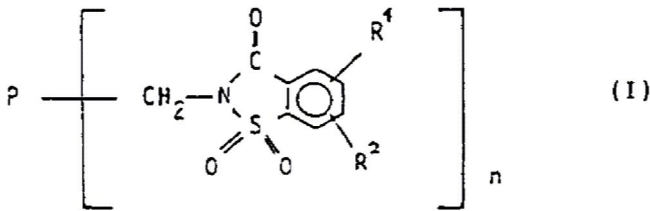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본질적으로 하기 (a) 및 (b)를 포함하는 안료 제제:

(a) 아조, 안트라피리미딘, 안탄트론, 퀴나크리돈, 페리논, 디케토피롤로피를, 디옥사진, 플라반트론, 인단트론, 이소인돌리논, 이소비올란트론, 페릴렌, 프탈로시아닌, 피란트론 또는 티오인디고 안료군 또는 상기 언급한 군중 여러 군에 속하는 안료의 혼합물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안료. (b) 하기 일반

식 (I)의 적어도 하나의 분산제



상기 식에서, P는 (a)에서 언급한 안료와 독립적으로, 아조, 안탄트론, 퀴나크리돈, 페리논, 디케토피를 로피플, 디옥사진, 인단트론, 페릴렌, 프탈로시아닌 또는 티오인디고 안료의 라디칼이고, R¹ 및 R²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할로겐, C₁-C₄-알킬, C₁-C₄-알콕시 또는 니트로이고, n은 1 내지 4이고, 사카린 라디칼의 CH₂그룹은 P의 방향족 탄소원자에 결합되어 있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인단트론, 페릴렌, 퀴나크리돈, 프탈로시아닌 또는 페리논 안료군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안료를 함유하는 안료 제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라디칼 P가 사용된 안료와 독립적으로 인단트론, 페릴렌, 퀴나크리돈, 프탈로시아닌 또는 페리논 안료의 라디칼인, 일반식(I)의 적어도 하나의 분산제를 함유하는 안료 제제.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n이 1 내지 3.6인 안료 제제.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¹ 및 R²가 각각 수소인 안료 제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기 (a) 내지 (d)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진 안료 제제:

a) 상기 언급한 안료 적어도 하나 99.5 내지 70중량%, b) 상기 언급한 분산제 적어도 하나 5 내지 20중량%, c) 하나 이상의 계면활성제 0 내지 5중량%, d) 추가의 통상적인 첨가제 0 내지 5중량% (이때, 상기 성분들의 비율은 각각의 경우 안료 제제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기 (a) 내지 (d)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진 안료 제제:

a) 상기 언급한 안료 적어도 하나 95 내지 80중량%, b) 상기 언급한 분산제 적어도 하나 5 내지 20중량%, c) 하나 이상의 계면활성제 0 내지 5중량%, d) 추가의 통상적인 첨가제 0 내지 5중량% (이때, 상기 성분들의 비율은 각각의 경우 안료 제제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산제(물)의 함량이 사용된 안료(들)의 총량에 대해 0.5 내지 30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5중량%인 안료 제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의 안료와 하나의 분산제로만 본질적으로 이루어진 안료 제제.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산제의 라디칼 P의 기본이 되는 안료와 사용된 안료가 모두 동일한 군에 속하는 안료 제제.

청구항 11

제1항에 정의된 일반식(I)의 분산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R¹ 및 R²가 각각 수소인 분산제.

청구항 13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n이 1 내지 3.6인 분산제.

청구항 14

라디칼 P의 기본이 되는 유기 안료를 축합재, 바람직하게는 황산 또는 다가 인산의 존재하에, 0℃ 내지 150℃의 온도에서 상응하는 사카린 유도체 및 포름알데하이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방출 화합물로 또는 사카린의 상응하는 N-메틸올 유도체로 축합시킴을 포함하는 제11항에 청구된 본산제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고분자량 물질을 착색시키기 위한, 제1항 내지 제10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안료 제제의 용도.

청구항 16

플라스틱 조성물, 용융물, 방사액, 와니스, 코팅 조성물 또는 인쇄 잉크 형태의 고분자량 물질을 착색시키기 위한, 제1항 내지 제10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안료 제제의 용도.

청구항 17

대단히 극성이 높고, 수성인 폴리우레탄 기재 와니스 또는 저용매 높은 고형물 함량의 아크릴계 와니스를 착색시키기 위한, 제1항 내지 제10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안료 제제의 용도.

청구항 18

니트로셀룰로즈 기재 인쇄 잉크를 착색시키기 위한, 제1항 내지 제10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안료 제제의 용도.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